

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정오표

2024. 7. 3.

교재명 : 2025 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(2024년판, 5월 30일)

| 페이지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51쪽 | 15① | 15④ |
| 80쪽 날개 | | 방통위 시정요구 → 항고소송의 대상 ○ (2011헌가13) |
| 95쪽 날개(보조단) 기출지문 ox 수정 | 2017 세무사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 → 취소소송의 대상 ○ | 2017 세무사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 → 취소소송의 대상 × |
| 103쪽 | 2017 세무사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다. (○) | 2017 세무사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다. (×) |
| 106쪽 기출지문 | 2008 세무사 문제 삭제 | |
| 131쪽 날개 | 현행법은 민사소송·행정소송 간 소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. 판례는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의 소 변경은 인정하나, 항고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에 관한 판례는 없다. | 현행법은 민사소송·행정소송 간 소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. 판례는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의 소 변경뿐 아니라 항고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도 인정하였다(2022두44262) |
| 151쪽 날개 | 2③ | 2① |
| 177쪽 날개 | 6② | 6⑤ |